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(주택법 시행규칙)

1. 주택건설사업의 실적 인정 기준 개선(안 별표 1 제4호 및 제6호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현행 실적확인 기준은 새로운 사업방식이나 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실적인정을 받지 못하는* 불합리 초래

*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소규모정비사업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동사업의 경우 실적인정 근거 부존재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주택건설실적 인정 대상으로 반영
 -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
-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: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주택건설실적 인정 대상을 개선하여 실적인정 사각지대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 : 해당없음